

의안번호	2200894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.
추 계 번호	24E089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2025년 6,704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3조 7,828억원(연평균 7,566억원)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제4항)	-6,704	-7,110	-7,540	-7,995	-8,479	-37,828	-7,566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4제4항 (특별세액공제)	○ 체육비 세액공제 신설 - (개정안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체육시설 이용료(연 200만원 한도)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4제4항(특별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
 - 개정안이 2024년 중 의결될 경우 20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5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함(징수기준)
 - －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됨
- 개정안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「재정패널조사」 상 성인 가구원의 체육활동비 지출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- 「국세통계연보」는 현행 제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개정안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「재정패널조사」(한국조세재정연구원)¹⁾ 상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제도 신설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동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
 - 「재정패널조사」 상 체육활동비 지출금액은 성인 취미생활 목적의 항목만이 가구단위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²⁾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성인 가구원 1인당 체육비 지출액으로 환산하여 추계에 활용함
 - －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인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 또한 상기 해당 가구의 1인당 체육비 지출액으로 간주함
-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
1) 가계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조사자료로서 2022년에 조사한 제15차년도(2023년) 자료가 최근 공표 자료임

2)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『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설문지(가구용)』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 방법

□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적용대상 인원수 및 적용대상 금액을 추정한 후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

- (개정안 적용대상 인원수) 「재정패널조사」 자료에 근거하여 체육비 지출 내역자의 비중을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규모별에 따라,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규모별에 따라 산출한 다음, 동 비중을 「국세통계연보」 상의 총급여규모별(근로소득) 및 종합소득금액규모별(사업소득) 인원수에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체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자의 인원수를 추정함³⁾

-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함
- 종합소득금액규모별의 경우, 개정안에 따라 「재정패널조사」 자료 상 사업소득 및 체육비 지출내역이 있는 자의 비중을 「국세통계연보」 상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인원수에 적용함

- (개정안 적용대상 금액) 「재정패널조사」 상 가구원별 체육비 지출금액을 산정한 후, 개정안의 세액공제대상 한도액 및 세액공제비율을 적용하여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상기 추정된 세액공제 적용대상자의 인원수에 곱하여 전체 총급여규모별 및 종합소득금액규모별 세액공제 금액 및 세수효과를 추계함

□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5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

- 문화체육관광부 「국민생활체육조사」의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연도별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 자료를 활용하여 동 연평균 증가율(6.05%)⁴⁾을 적용함

3) 「재정패널조사」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(8,784 가구) 중 체육비 지출내역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(1,409 가구)의 비율은 약 16%이며, 가구별로 조사된 동 체육비 지출내역을 본 추계서의 전체에 따라 가구원별로 환산할 경우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(1만 4,897명) 중 약 17%(2,589명)가 체육비 지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4) 2018년(6만 992원)에서 2022년(7만 7,135원)까지 연평균 6.05% 증가

(3) 추계 결과

- (2022년 기준 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5,622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신설 세액공제 규모는 근로소득 거주자 관련 4,132억원이며 사업소득 거주자 관련 1,490억원으로 추계됨
 - 이후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는 최근 체육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함

[표 4]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(근로소득자, 2022년 기준)
(단위: 천명, 만원)

총급여액 규모	총급여 인원 ¹⁾	체육비 지출 인원 ²⁾	1인당 체육비 지출금액 ²⁾	1인당 세액공제 대상금액	1인당 세액공제 금액	1인당 결정세액 ³⁾	세수효과 (억원)
	A1	B1	C1	$C1' = \min(C1, 200)$	$D1 = C1' \times 15\%$	E1	$G1 = -\min(D1, E1) \times B1$
합계	10,645	2,884					-4,132
1천만 이하	0	0	78	69	10	85	-0
1.5천만 이하	115	21	83	72	11	1	-2
2천만 이하	514	85	92	76	11	6	-55
3천만 이하	2,041	303	83	67	10	20	-304
4천만 이하	1,807	385	96	76	11	60	-440
4.5천만 이하	801	153	107	86	13	111	-198
5천만 이하	715	167	91	75	11	151	-187
6천만 이하	1,179	325	89	77	12	220	-373
8천만 이하	1,542	498	125	98	15	382	-731
1억 이하	904	363	185	121	18	723	-658
2억 이하	922	510	191	135	20	1,744	-1,031
3억 이하 ²⁾	72	42	191	135	20	5,315	-84
5억 이하 ²⁾	24	24	191	135	20	10,225	-48
10억 이하 ²⁾	7	7	191	135	20	21,330	-15
10억 초과 ²⁾	2	2	191	135	20	80,490	-3

주: 1) 현행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인원수임

2) 「재정패널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체육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중을 구한 뒤,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(A1)에 곱하여 추정함. 다만, 총급여규모 2억원 초과 구간은 조사대상 가구원수의 전체 대비 비중이 0.1%에 불과하여 1인당 체육비 지출금액이 1억원 초과 및 2억원 이하 구간과 동일하다고 가정함

3) 현행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1인당 결정세액임

자료: 「국세통계연보」(국세청, 2023) 및 「재정패널조사」(제15차, 한국조세재정연구원)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(사업소득자, 2022년 기준)

(단위: 천명, 만원)

종합소득 금액 규모	종합소득 금액 인원 ¹⁾	체육비 지출 인원 ²⁾	1인당 체육비 지출 금액 ²⁾	1인당 세액공제 대상금액	1인당 세액공제 금액	1인당 결정세액 ³⁾	세수효과 (억원)
	A2	B2	C2	$C2' = \min(C2, 200)$	$D2 = C2' \times 15\%$	E2	$G2 = -\min(D2, E2) \times B2$
합계	7,634	1,261					-1,490
1천만 이하	1,891	68	73	70	10	14	-71
2천만 이하	1,990	204	108	87	13	39	-266
3.5천만 이하	1,615	167	94	77	12	120	-194
4천만 이하	304	53	78	67	10	228	-54
5천만 이하	425	72	73	63	10	311	-69
6천만 이하 ²⁾	294	70	90	76	11	438	-80
8천만 이하	367	105	98	82	12	683	-129
1억 이하	214	97	79	72	11	1,082	-105
2억 이하	353	252	116	65	10	2,333	-246
3억 이하 ²⁾	84	75	198	107	16	5,635	-121
5억 이하 ²⁾	54	54	198	107	16	10,189	-86
7억 이하 ²⁾	18	18	198	107	16	17,544	-29
10억 이하 ²⁾	11	11	198	107	16	26,334	-18
10억 초과 ²⁾	14	14	198	107	16	93,147	-22

주: 1) 현행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수임

2) 「재정패널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규모별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체육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중을 구한 뒤,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종합소득금액규모별 인원 수(A2)에 곱하여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자 분포를 감안하여 추정함. 다만, 종합소득금액 규모 5천만원 초과 및 6천만원 이하 구간은 「재정패널조사」 표본 가구원이 없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체육비 지출이 있는 자의 인원수 및 지출금액이 인접 구간(4천만원 초과 및 5천만원 이하 구간, 6천만원 초과 및 8천만원 이하 구간)의 평균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함. 또한, 종합소득금액 규모 2억원 초과 구간은 「재정패널조사」 표본 가구원수의 전체 대비 비중이 2%에 불과하여 체육비 지출자 비중 및 1인당 지출금액이 인접구간 등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함

3) 현행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1인당 결정세액임

자료: 「국세통계연보」(국세청, 2023) 및 「재정패널조사」(제15차, 한국조세재정연구원)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2025년 6,704억원⁵⁾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3조 7,828억원(연평균 7,566억원)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제4항)	-6,704	-7,110	-7,540	-7,995	-8,479	-37,828	-7,566

※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

5) 본 추계서의 전제에 따라 2022년 기준 세액공제 규모(5,622억원)에 최근(2018~2022년) 체육비 연평균 증가율(6.05%, 문화체육관광부 「국민생활체육조사」) 적용: $5622 \times (1 + 6.05/100)^3$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